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정 소 영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홍 석 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정 소 영

# 인 준 서

정소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최근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부재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역사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역사교육은 정확한 역사 지식의 습득과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일협력 문제는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교육학계의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교과서 분석 연구는 미비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대상 교과서가 6, 7차 교육과정에 한정되었고,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우선 ‘친일’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부일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청산 작업에 따라 규정된 부일협력에 대한 용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용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서술 분석은 부일협력 문제와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교과서에 기술된 ‘친일’ 용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교과서에서 ‘친일’이라는 용어를 기술하면서 갑오·을미개혁 시기의 개화파 인사에 대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정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에 부일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부일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문화·예술적 측면의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행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일협력 행위에 대

한 여러 측면에서의 서술이 보강되어야 하며, 관련 사례와 자료 또한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와 관련된 서술 자체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서술은 여러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한다. 청산 시도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반민특위의 활동과 해체까지 그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하고 관련 자료 또한 부가설명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머리말 .....	1
II. 부일협력의 개념과 유형 .....	6
1. 국가적 차원의 청산 작업과 ‘반민족행위’ .....	6
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용례 .....	12
III.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서술과 문제점 .....	17
1. 구한말 매국행위 .....	17
2.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 .....	22
3.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 .....	27
IV.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서술과 문제점 .....	37
1.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 원인 .....	37
2.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및 반민특위의 활동 .....	40
3. 반민특위의 해체 과정 .....	44
V. 맺음말 .....	50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차

<표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	4
<표 2>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을 지칭하는 용어 사례 .....	15
<표 3> 매국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18
<표 4> 교과서에 실명이 거론된 매국행위자 .....	22
<표 5> 통치기구에 종사한 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23
<표 6> 교과서에 실명이 거론된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	28
<표 7> 경제적 측면의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29
<표 8> 문화·예술 측면의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31
<표 9>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 원인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38
<표 10>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41
<표 11> 반민특위의 해체 과정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	45

## I. 머리말

부일협력 문제는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다. 해방 직후 미군정시기에 부일협력자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미군정은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였다. 1947년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부일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를 제정했으나 미군정이 끝내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부일협력자 처벌이 좌절되었다. 제헌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 처벌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국회 안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는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여전히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가 쟁점화 되었다.

2004년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사활동을 마친 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편찬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출간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청소년의 역사인식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는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한 언론사에서 중고생 6백여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20%의 학생들이 일제에서 해방된 연도를 모르고, 소수이지만 윤봉길·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sup>1)</sup> 또 다른 언론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육일승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3.1절을 ‘삼점일절’로 읽거나 ‘을사오적’의 대표로 손꼽히는 이완용을 독립운동가라고 알고 있었다.<sup>2)</sup>

---

1) 「청소년 ‘빈약한 역사 인식’ 심각», 『KBS』 2013년 6월 21일.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역사교육은 정확한 역사 지식의 습득과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부일협력 문제에 대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하며,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친일’ 문제에 대한 연구는 용어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는 문제,<sup>3)</sup> 친일파 및 친일단체,<sup>4)</sup> 친일파 청산 문제<sup>5)</sup>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일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후 친일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성숙하여 2002년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제1차 국민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친일 청산이 학계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 결과였다.<sup>6)</sup>

반면 역사교육학계에서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교과서를

- 
- 2) 「“육일승천기 예뻐요” 청소년 역사교육 현실」, 『SBS』 2013년 4월 8일.
  - 3)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임현영,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하원호, 「친일파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배경」,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이용창, 「일제 식민잔재와 친일문제」, 『국학연구』 7, 2005 등.
  - 4) 김삼웅·이현중·정운현, 『친일파 : 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1990; 장하진, 「친일파 군상 여류명사들의 친일행적-김활란·모윤숙·배상명·이숙중·송금선」, 『역사비평』, 1990;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박태균, 「해방 후 친일파의 단정·반공운동의 전개」, 『역사비평』 23, 역사문제연구소, 1993;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99인』 1~3, 돌베개, 1993; 장세운, 「일제하 고문시험 출신자와 해방 후 권력엘리트」, 『역사비평』, 1993;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1~3, 청년사, 1994; 황묘희, 「침략전쟁기 상해의 친일조선인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황묘희, 「침략전쟁시기 친진의 친일한인조직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2007; 박수현·이용창·허중,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8-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화 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이태훈, 「일진회의 ‘보호통치’인식과 ‘합방’의 논리」, 『역사와 현실』 78, 2010;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등.
  - 5)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 27, 1993; 윤해동,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등.
  - 6) 김민철·조세열, 「쟁점과 동향 : ‘친일’ 문제의 연구경향과 과제」, 『사총』 63, 역사학연구회, 2006, 178, 186쪽 참조.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동현, 이해영, 김보림, 한성수의 연구가 있다. 김동현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된 부일협력자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반민특위에 대한 서술”과 “친일 인물에 대한 서술”,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한 외국 사례에 대한 서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부일협력자 문제 자체보다는 반민특위를 통한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sup>7)</sup>

이해영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된 ‘친일지식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역사 논술쓰기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친일지식인’에 대한 역사인식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친일파’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친일파’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유형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과서 분석 대상을 ‘친일지식인’으로만 제한하여 전반적인 부일협력자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sup>8)</sup>

김보림은 한·일 역사적 쟁점, 즉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점기 생활 모습”, “독도 문제”, “친일파와 청산 문제”, “박정희 정부의 한일 협정”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서 서술의 변천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고 있지만 다른 쟁점에 비해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였다.<sup>9)</sup> 한성수는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반민특위 서술을 연구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조직 과정, 반민특위의 활동, 반민특위의 해체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일협력 문제가 아닌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만을 연구하였다.<sup>10)</sup>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대상 교과서가 6, 7차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한성수의 연구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포함하여 연구

7) 김동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친일파 문제에 대한 서술-6종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8) 이해영, 「친일지식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역사인식」, 『역사교육연구』 11, 2010.

9) 김보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한·일 역사적 쟁점에 관한 근·현대사 서술의 변천」, 『일본문화연구』 39, 2011.

10) 한성수,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반민특위 서술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하였다. 그리고 ‘친일파’, ‘반민특위’ 등 개별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였지만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니었다. 또한 모든 연구에서 ‘친일’ 또는 ‘친일파’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약칭
교학사	권희영 외 5인	2014	교학사
금성출판사	김종수 외 7인	2014	금성
두산동아	왕현중 외 6인	2014	두산
리베르스쿨	최준채 외 4인	2014	리베르
미래엔	한철호 외 7인	2014	미래엔
비상교육	도면희 외 7인	2014	비상
지학사	정재정 외 7인	2014	지학사
천재교육	주진오 외 8인	2014	천재

본고에서 분석할 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출판사와 집필진을 살펴보면 위 <표 1>과 같다. 편의상 출판사 명칭으로 각 교과서를 구분하려고 한다.

‘친일(親日)’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일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부일협력행위와 반민족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모호성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개념상으로는 ‘부일(附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민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이란 용어를 덧붙여 ‘부일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친일(親日)’이라는 용어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부일협력에 대한 용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친일’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부일협력 문제는 부일협력 행위와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로 구분하여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부일협력 행위를 매국활동, 일제 통치에 협력한 행위,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로 구분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부일협력 행위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교과서 내용서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 제시하려고 한다.

## II. 부일협력의 개념과 유형

‘친일(親日)’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친일’이라는 용어를 일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보다 일제와 가깝게 지내며 매국행위를 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협력·옹호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친일’은 관용적으로 ‘부일협력’, ‘반민족행위’, ‘민족반역행위’ 등과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친일=반민족이라는 등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기에까지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up>11)</sup>

한편 부일협력의 범주와 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해방 이후 제기된 각 단체의 규정·강령·성명서에는 ‘친일파’, ‘친일본자’, ‘매국노’,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매국노는 개인의 윤리성이 강조되고, 부일협력자는 식민체제라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당시에는 ‘친일파’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보다는 일제의 식민지배 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한다는 대의와 목적이 더 중요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친일파’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된 사례는 많지 않다.<sup>12)</sup>

### 1. 국가적 차원의 청산 작업과 ‘반민족행위’

부일협력자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해방 직후의 일로,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은 1947년에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

11) 하원호, 「친일파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배경」,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178쪽.

12)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26쪽; 이용창,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문제」, 『국학연구』 7, 2005, 302쪽; 이기훈, 「친일파 협력」, 『역사비평』, 2005, 49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이하 특별조례)」를 제정하였다.<sup>13)</sup> 여기에서는 ‘민족 반역자’, ‘부일협력자’를 따로 구분하였으며, 초안에는 별도의 범주로 ‘전범(戰犯)’을 규정하였다. 이후 최종안에서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로만 구분하고 전범자는 부일 혹은 반역자 규정에 포함되었다.<sup>14)</sup>

정부수립 이후 제헌국회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요구에 따라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9월 22일에 법을 공포하였다. 「반민족 행위처벌법」에서 제시한 ‘반민족행위’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죄(罪)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국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4조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습작(襲爵)한 자
2. 중추원(中樞院)·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參議)되었던 자
3. 칙임관(勅任官)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13) 이 법의 초안은 행정부문의 모든 관공리를 친일파로 포함시켜 친일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입법의원 내외의 비판 속에서 수정안과 절충안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히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 이상, 군(軍)인 경우 판임관 이상, 경찰은 고등계에 재직할 자로 세분하였으나 실질적인 범위는 축소되었다. (이강수, 위의 책, 65~80쪽 참조.)

14) 「특별조례」 최종안에 따르면 민족반역자는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通謀)하거나 영합협조(迎合協調)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로, 국권 침탈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에 조인한 자, 일본으로부터 작(爵)을 수여받은 자,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등이 해당된다. 부일협력자는 “일정시대에 일본 세력에 아부하여 악질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로, 중추원 부의장 및 참의되었던 자,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일본군에 현금 또는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등이 해당된다. 간상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며 국민생활을 곤란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108~110쪽.)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軍)·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병기·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道)·부(府)의 자문(諮問)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 죄적(罪迹)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侵略主義)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勳)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憲兵),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sup>15)</sup>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장 죄(罪)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해보면, 매국행위자는 제1·2조와 4조의 1항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매국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인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가 해당된다. 일제 통치에 협력한 자는 제3조·4조의 4·5항의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하거나 방해한 자로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한 자와, 4조의 2·3·6·8~10·12항과 제5조의 의원·관공리·군이나 경찰의 관리 등 통치기구에 가담하여 활동한 자나 개인적으로 일제의 통치정책에 협력한 자가 해당된다.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는 4조의 7·11항의 군수공업을 경영한자나 여러 분야에서 일본 침략주의에 협력하도록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가 해당된다. 즉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매국행위자, 일제

15) 김영진 편, '반민족행위처벌법 전문' 『반민자 대공판기』, 한풍출판사, 194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pj\\_002\\_0010\\_0010](http://db.history.go.kr/id/pj_002_0010_0010), 2016년 10월 24일 검색.)

통치에 협력한 자,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한 사람에게 대하여 반민족행위자로 일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에도 부일협력자 청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활동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와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6)</sup>고 규정하였다. 이 특별법은 친일청산문제를 처벌보다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진실규명을 통한 정의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와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호.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제2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제3호.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제4호.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

1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258~259쪽.

- 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 제5호.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제7호.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제8호. 일본제국의회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 제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제11호.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제12호.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 제13호.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제14호.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 제15호.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제16호.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제17호.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제18호.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 제20호.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sup>17)</sup>

이 특별법에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를 범주화해보면 1~5호의 항일 독립운동 탄압행위, 6~8호의 매국행위, 9·15~18·20호의 일제 통치기구에 가담

1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I, 259~260쪽.

한 행위, 10~14·19호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sup>18)</sup> 이렇게 본다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란 매국행위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행위를 넘어 모든 종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 행위가 적극적일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친일반민족행위’란 일본제국주의의 부당한 식민지 지배와 통치, 그리고 반인륜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정당한 발전을 저해하고 민족구성원에 불이익을 미친 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일행위의 유형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었다. 이는 처벌의 목적보다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모든 부일협력 행위에 대하여 ‘반민족행위’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법 모두 ‘친일’ 과거 청산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용어 또한 ‘반민족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는 민족주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부일협력의 문제점을 제한적으로 제기하는 한계가 있다. 부일협력 문제는 비단 민족주의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협력을 통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군국주의적 억압 통치에 대한 협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반민족행위’로만 개념을 규정하면 전쟁 협력을 통한 평화파괴의 측면과 군국주의 억압 통치에 협력한 측면이 희석되기 때문에 ‘부일협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를 크게 매국행위,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행위, 일제의 통치기구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한 행위,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Ⅱ, 30~32쪽 참조.)

1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Ⅱ, 32쪽.

## 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용례

교과서에 기술된 ‘친일’의 용어는 구한말 근대화를 추진한 세력을 설명할 때부터 언급된다. 주로 ‘친일 내각’, ‘친일 정권’, ‘친일파 관료’, ‘친일 대신’ 등으로 기술되는데, 이때 기술되는 대상은 갑오·을미개혁을 추진한 개화파 인사나 내각이었다.

“일본은 흥선 대원군과 김홍집 등을 앞세워 친일 정권을 수립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제1차 갑오개혁을 강행하였다. (중략) 이후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여 친일 내각을 조직하고 을미개혁을 진행하였다.”<sup>20)</sup>

“친일 정권인 김홍집 내각은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개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략) 을미사변으로 친러 내각이 붕괴되고 친일파 관료 중심의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어 급진적이고 친일적 성격의 개혁이 추진되었다.”<sup>21)</sup>

“고종은 미국, 러시아와 가까운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위기를 느낀 일본은 미우라 고로를 주한 공사로 파견하여 세력을 만회하려 하였다. 미우라 공사는 일본 군대와 일본 낭인들을 경복궁에 난입시켜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그 결과 김홍집·유길준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다시 구성되었다.”<sup>22)</sup>

(강조와 밑줄은 필자.)

갑오·을미개혁시기 개화세력에 대하여 ‘친일’이란 용어로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두산·리베르·비상·지학사이다. 이들 교과서는 정치세력의 외교적 성격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고, 다른 성향의 세력에 대해서도 ‘친러’라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 교과서들은 러일전쟁 개전 이후에도 ‘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을사오적·일진회

20) 권희영 외 5인, 『한국사』, 교학사, 2014, 189~190쪽.

21) 최준채 외 4인,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223~225쪽.

22) 도면희 외 7인, 『한국사』, 비상교육, 2014, 219쪽.

등을 설명할 때 ‘친일파’, ‘친일 단체’라고 기술하였다. 같은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의 외교적 성향을 설명하는 개념과 부일협력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항일의병운동에 대한 두산과 리베르의 서술은 이러한 혼란을 심화시킨다.

“이들(을미의병; 필자)은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 관리와 친일 인사들도 처단하였다. (중략) 이들(정미의병; 필자)은 각국 외교 사절에게 통문을 보내어 의병 부대가 정식 군대로 국제법상 교전 단체임을 밝혔고, 해외 동포에게 일제와 친일파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격문을 보냈다.”<sup>23)</sup>

“활빈당은 친일파 관리를 처단하거나 일본 상인을 공격하였다. (중략) 을사조약을 계기로 다시 봉기한 의병들은 을사조약의 폐기와 친일 내각의 타도를 내세우며 무장 항전을 벌였다.”<sup>24)</sup>

(강조와 밑줄은 필자.)

두산과 리베르는 같은 지면의 을미·을사·정미의병 서술에서 의미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에 기술된 ‘친일 인사’, ‘친일파’, ‘친일 내각’이라는 단어는 정치세력의 외교적 성향을 지칭하는지 부일협력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결국 “항일의병운동”이라는 소주제로 한 지면에 기술된 같은 용어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

반면 금성·미래엔·천재는 갑오·을미개혁의 추진세력에 대해서 ‘친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들의 정치·외교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설명을 하고 있다.

23) 왕현중 외 6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186~187쪽.

24) 최준채 외 4인, 위의 책, 238쪽.

“그러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그에 따른 개화파 정부의 수립으로 내정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중략) 그(일본 공사 이노우에; 필자)는 부임하자마자 흥선 대원군을 축출하고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 등 개화당 인사들을 귀국시켰다. 또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여 박영효 주도로 김홍집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도록 막후에서 조종하였다. (중략) 이후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이 다시 성립하여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실시 등 을미개혁이 추진되었다. (중략) 그 결과 개화파 정부는 무너지고 ‘왜대신’으로 지목 받은 김홍집은 군중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1894년부터 2년여에 걸쳐 추진된 갑오·을미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sup>25)</sup>

“일본의 강요로 정부는 김홍집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내각을 수립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략)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에 망명했던 박영효를 앞세워 조선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략) 을미사변 이후 유길준 등이 김홍집 내각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3차 개혁이 추진되었다.”<sup>26)</sup>

“일본의 위협 속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정권이 수립되고, 흥선 대원군이 섭정으로 추대되었다. 김홍집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략)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흥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으며, 박영효 등을 등용하여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중략)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조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은 가운데, 다시 구성된 김홍집 내각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sup>27)</sup>

이들 교과서에서는 ‘친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화파 정부’, ‘왜대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떤 정치·외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지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여러 사건의 인과관계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용어는 러일전쟁 이후 시기부터 사용하여 부일협력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

25) 김종수 외 7인,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242, 245~246쪽.

26) 한철호 외 7인, 『한국사』, 미래엔, 2014, 198~200쪽.

27) 주진오 외 8인, 『한국사』, 천재교육, 2014, 201~203쪽.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교과서별 사용한 용어는 <표 2>와 같다.

<표 2>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을 지칭하는 용어 사례

\*각 교과서별 중복되는 단어는 제외함

출판사	사용된 용어
교학사	친일인사, 친일관리, 친일단체, 을사오적, 매국노, 친일파, 반민족행위
금성출판사	친일단체, 앞잡이, 을사오적, 친일파, 매국노, 친일문학, 친일적 성향, 하수인, 친일 반민족 행위
두산동아	친일단체, 친일인사, 친일파, 을사5적, 친일활동, 친일반민족자, 반민족 행위자, 친일경력자
리베르스쿨	을사5적, 친일단체, 친일파, 반민족적 행위, 친일문학
미래엔	을사오적, 매국노, 친일인사, 친일사관, 친일 매국노, 친일세력, 친일 반민족 행위,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 친일파 거두, 친일파
비상교육	친일파, 을사5적, 친일 매국노, 친일당, 매국단체, 친일인사, 일제협력자, 친일 반민족 행위, 친일 인명사전
지학사	을사5적, 친일단체, 친일 매국노, 친일세력, 친일인사, 친일파, 침략원흉, 일제협력, 반민족행위
천재교육	친일단체, 을사5적, 친일인사, 친일부자, 친일파, 일제협력, 침략원흉, 친일문학, 친일행위, 친일민족반역자, 반민족행위자

위 <표 2>를 보면 8종 교과서 모두 일제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친일’, ‘친일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친일’, ‘친일파’라는 용어를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 혹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조약을 체결한 관리들을 ‘을사오적’이나 ‘매국노’로 지칭하였다. ‘반민족행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해방 이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서술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위의 용례 중 ‘앞잡이’, ‘하수인’, ‘침략원흉’ 등의 단어들은 인용한 사례에서 나오는 경우이거나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었다. 이 단어들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을 대변하는 단어로 볼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있는 느낌을 준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단어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교과서에서 기술된 ‘친일’의 용례와 부일협력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살펴본 결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친일’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종의 교과서에서는 구한말 개화세력의 정치·외교적인 성향과 부일협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친일’을 사용하였다. 특히 갑오·을미개혁을 추진한 세력에 대하여 그 정치·외교적인 성격을 ‘친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이라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개화세력을 ‘부일협력자’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게다가 한 지면에 정치성향을 지칭하는 의미로의 ‘친일’과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의 ‘친일’이 함께 사용되면서 의미의 혼동은 가중되었다. 그러므로 ‘친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정의를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다른 3종의 교과서와 같이 ‘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통해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각 교과서별로 필자의 관점에 따라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기술되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교과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기술된 용어는 ‘친일파’였지만 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생각이 담겨있는 단어들도 있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이라는 의미를 지칭하기보다 매국행위 같이 한 측면에 국한된 의미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각 교과서별로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미가 모호한 ‘친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일제 식민지배의 구조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부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지민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이란 용어를 덧붙여 ‘부일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I.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서술과 문제점

#### 1. 구한말 매국행위

매국행위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이 일제에 강점당해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데 앞장섰던 행위를 매국행위라 할 수 있다. 매국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고위관료를 지낸 자들이 스스로 국권 침탈조약이나 협정을 조인하는 데 참여하는 행위이다.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상층 지배세력은 민족과 국권의 수호를 저버리고 일제에 팔아넘긴 대가로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아 조선귀족의 작위, 거액의 은사금, 훈장과 포상 등 일정한 대우를 받고, 대부분 병합 이후에도 이를 계속 영위하였다.

다른 하나는 ‘합방’을 조선 문명화를 위한 유일한 방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이것이 조선인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일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앞장서서 ‘합방’을 청원하고 촉구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한 행위이다. 국권이양에 직접 가담한 것 외에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합방’을 청원함으로써 사회 여론을 조직하고 일제의 병합을 정당화한 것도 매국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일반 민중들조차 ‘합방’을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보는 시각이 있던 상황에서, 고위관료 및 지식인들이 스스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논리를 수용하고 그 논리로서 일제의 병합을 정당한 것으로 선전하였던 것이다.<sup>28)</sup> 매국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8) 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 위의 책 III, 34~37쪽 참조.

<표 3> 매국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술내용
교학사	<p>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보호 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고종 황제와 관료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일본은 이완용 등 을사 5적을 앞세워 황제의 승인 없이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다(1905.11.). (중략) 일본은 1909년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관을 빼앗고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이용하여 친일 여론을 유도하였다. (중략) 그리고 무력을 동원하여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1910. 8.). (203~204쪽)</p>
금성출판사	<p>일본은 이 방침에 따라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두도록 강요하였으며, 1905년에는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을 강요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260쪽)</p> <p>(사진자료)을사늑약 풍자 만평 : 왼쪽에 있는 ‘오적등’(을사오적)이 ‘왜병’(일본군)의 무력에 굴복하여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왜적’(일본 사절)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60쪽)</p> <p>일본은 1909년 7월 한국을 병합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중략) 이를 구실로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동원하여 합방 청원 운동을 벌이도록 하였으며, (중략) 1910년 3대 통감으로 한국에 부임한 데라우치는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 상태를 조성하고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강제 병합을 밀어붙였다. (261쪽)</p>
두산동아	<p>열강에게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은 강제로 제2차 한·일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 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1905.11.을사조약). (중략) 일본은 일진회를 비롯한 일부 친일 단체와 친일 인사로 하여금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1910년 8월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한국 병합 조약을 공포하였다.</p> <p>(사진자료)을사조약 풍자화(영문잡지 “Korea Review”) : 일본이 고종을 위협하여 조약을 강요했다는 것으로 풍자하였다. (183~184쪽)</p>
리베르스쿨	<p>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를 동원하여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략) 일제는 1909년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였으며,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부추겨 합병 여론을 조성하였다. 1910년 6월에는 경찰권을 박탈하고, 8월에는 이완용 내각과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하였다. (233~235쪽)</p>

미래엔	<p>일본은 군대로 궁성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일부 대신이 강력히 반대했으나 일본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 성립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이어 일진회를 사주해 친일 여론을 조성하는 등 강제 ‘병합’의 수순을 밟아 갔다. (중략) 그리고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이른바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다(1910. 8.). (207~208쪽)</p> <p>(사진자료)한·일 협약도(韓日齣約圖, 신한민보) : 제목의 ‘협(齣)’자는 위협한다는 뜻이다. 을사늑약이 일제의 위협(威脅)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풍자하고 있다. (207쪽)</p> <p>첫째는 이른바 을사늑약 등 일제의 강점 과정에 적극 참여한 매국노이다. 이들은 매국의 대가로 귀족 작위를 받고 중추원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막대한 토지와 은사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대부분 이를 후손에게 대물림해 주었다. (252쪽)</p>
비상교육	<p>1905년 11월 일본 정부의 특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한 상태에서 고종과 정부 대신들을 위협하고, 이완용 등의 을사5적을 앞세워 이른바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230쪽)</p> <p>(사진자료)을사조약 원본 : 날인을 한 외부대신 박제순은 고종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며 (중략) 공식 명칭이 없이 체결되어 당시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230쪽)</p> <p>일본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을 유도하고,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1910. 8. 22.). (231쪽)</p>
지학사	<p>열강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제는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중략) 일제는 박제순, 이완용 등 이른바 을사 5적의 동의만으로 공식 명칭조차 붙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약을 체결해 버렸다. (중략) 또 친일 단체인 일진회로 하여금 대한 제국을 일본과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삼엄한 분위기에서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체결한 한국 병합 조약이 발표되었다(1910.8.29.). (244~245쪽)</p>
천재교육	<p>이어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에 서명하게 하였다(1905.</p>

	11.). (중략) 일본은 대한 제국을 완전히 병합하기 위해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마침내 일본은 군대와 경찰을 곳곳에 배치한 가운데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였다(1910. 8). (213쪽)
--	---

8종 교과서는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약에 조인하고, 합방 청원 운동을 통해 일본과의 합방 여론을 조성한 행위에 대하여 매국행위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서술에서 차이는 있으나 매국행위에 대한 개념은 일치하였다. 그리고 8종 교과서는 ‘강제로’, ‘강요’, ‘위협’, ‘강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일본이 무력을 통해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당일에 일본군이 황제가 있는 경운궁을 포위하고 회담장에도 직접 들어가 한국 측 대신들을 위협하였다. 또한 중무장 상태로 한성 전역 요소마다 배치되어 조선인들의 움직임을 감시·제압하였다.<sup>29)</sup> 8종 교과서 모두 이를 반영하여 조약체결 과정을 서술하였다.

을사오적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을사조약에 대한 본문 내용에서 교학사·미래엔·비상·지학사는 일본이 을사오적을 앞세워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금성은 본문에서 을사오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진자료로 제시한 ‘을사늑약 풍자 만평’에 대한 설명으로 “왼쪽에 있는 ‘오적등’(을사오적)이 ‘왜병’(일본군)의 무력에 굴복하여”<sup>30)</sup>라고 하며 을사오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두산·리베르·천재는 을사조약 관련 부분에서 을사오적에 대한 서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두산은 이후 “최익현, 을사 5적 처벌을 주장하다”<sup>31)</sup>라는 제목으로 최익현의 상소를 직접 인용하여 을사오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리베르와 천재는 이후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나철·오기호 등에 의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었다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 을사오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

29) 김동명, 「한국 병합과 식민지 지배」, 『일본역사연구』 18, 2003, 70쪽.

30) 김종수 외 7인, 위의 책, 260쪽.

31) 왕현중 외 6인, 위의 책, 186쪽.

다.

8종 교과서는 모두 매국 단체인 일진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서술이 달랐다. 금성·두산·리베르·비상·지학사·천재는 일진회의 부일협력 활동에 대하여 “합방 청원 운동”,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 “합병 여론 조성”, “합방 청원서 제출” 등의 설명을 통해 일본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일진회가 앞장서 합방 청원 운동을 펼쳤다고 서술하였다. 반면 교학사와 미래엔은 일본이 일진회를 사주해 ‘친일 여론’을 조성하였다고 모호하게 서술하여 일진회가 어떤 활동을 통해 ‘친일 여론’을 조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당시 일진회는 내각 진출이 좌절되고, 통감부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정치·사회적인 어려움도 심화되어 내부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진회 간부들은 생존을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09년 12월 4일에 정합방장소를 통감과 이완용에게 발송하며 본격적인 합방 운동에 돌입하였다. 즉 일진회의 합방론은 당시 일진회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고 정치·사회적인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기된 것이었다.<sup>32)</sup> 그렇기 때문에 일진회의 “합방 청원 운동”은 개인 또는 일진회라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일협력적인 활동이었음을 부각시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매국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 중 특징적인 서술이 있다. 미래엔은 교과서 지면을 두 쪽이나 할애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sup>33)</sup>라는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일협력자에 대한 유형을 “친일 매국노”,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미래엔은 매국노에 대해 매국의 대가로 작위를 수여받고 막대한 토지와 은사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32) 이태훈, 「일진회의 ‘보호통치’인식과 ‘합방’의 논리」, 『역사와현실』 78, 2010, 363~367쪽 참조.

33) 한철호 외 7인, 위의 책, 252~253쪽.

매국행위를 한 부일협력자들이 일제로부터 매국의 대가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표 4> 교과서에 실명이 거론된 매국행위자

	을사오적	일진회
교학사	이완용, 박제순	없음
금성출판사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두산동아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용구
리베르스쿨	이완용	이용구, 송병준
미래엔	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없음
비상교육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지학사	박제순,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천재교육	이완용	없음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인물은 이완용이었다. 이완용은 을사오적의 대표인물로 거론되었으며, 앞장서서 일본과의 합방조약을 조인한 인물로 서술되었다. 을사오적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박제순이 언급되었고, 그 외에 이지용·이근택·권중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일진회와 관련되어 실명을 거론한 교과서는 금성·두산·리베르·비상·지학사로 5종이었다. 5종 교과서에서 모두 이용구를 언급하였다. 이용구는 일진회에 대한 추가설명에서 거론이 되거나, 동학교도로서 부일협력단체인 일진회에 참여해 합방 청원 운동을 한 인물로 언급되었다.

## 2.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은 크게 항일 독립운동 탄압 행위와 통치기구에 종사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항일 독립운동 탄압 행위는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친 시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6종 교과서 모두 항일 독립운동 탄압 행위와 관련된 부  
일협력 문제는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금성과 미래엔에서만 일제 통  
치기관에 종사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통치기구에 종사한 행위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또는 참의로 활동  
하거나,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 판사·검사 또는 사법 관리로  
활동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에 가담하여 일제 통치 정책에 협력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통치기구에 종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협력  
한 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통치기구에 종사한 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 술 내 용
교학사	총독부의 자문 기구로 중추원을 두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행사하지 못 하였으며,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 및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중략) 일 제는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도에는 도 평의회, 부와 면에는 협의 회를 설치하여 친일 인사들을 임명하거나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사 람이 일제에 협력하였고,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도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 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240~241쪽)
금성 출판사	중앙 행정의 고위직은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조선인의 정치 참여 를 선전할 목적으로 중추원이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날개)중추원 : 조선 총독의 자문 기관으로 일제의 선전과는 달리 정책 심의나 의결 기능은 전혀 없었고, 정무총감이 의장을 겸임하였다. 이완용, 송병준 등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참여하였다. (293쪽)
	일제는 지방 제도를 개편하면서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 등을 설치하 였다. 이들 기관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으로, 상층 자산가들을 지배 체 제에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친일파 육성에 주력하여 친일파들 로 하여금 친일 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게 하였다. (296쪽)
	일부 조선인들은 일제의 친일파 육성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자신의 출 세와 영달을 위해 군인, 경찰, 관료, 법조인 등으로 일제의 권력 기관에 투 신하여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조선 통치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는 한편, 앞장서서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을 탄압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자행하였다. (343쪽)
두산 동아	총독 아래에는 정무 총감과 경무 총감이 각각 일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조선인이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고 친일 인사를 임명하였다. (214쪽)
	문화 통치는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를 허용하면서 친일파를 길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성격이 강하였다. 일제는 민족 지도자와 지방 유지를 포섭하는 데 힘을 쏟아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제 통치에 협력하였다. 일부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이 아니라 자치와 참정권 운동을 벌이고, 심지어 이광수처럼 민족 개조를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다. (216쪽)
리베르 스쿨	일제는 대외적으로는 조선인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총독부의 자문 기구인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와 대한제국 시기의 고관들이 중추원에 참여하였지만 실권은 없었다. (274쪽)
	조선인의 참여를 명목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였지만, 선거나 임명으로 구성된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 기관에 불과하였다. (276쪽)
미래엔	일제는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중추원을 설치했으나, 친일 매국노들로 구성된 중추원은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었다. (날개)중추원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로 설치했으나,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 일제가 친일파를 우대하고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242쪽)
	“허용되지 않은 참정권, 이름뿐인 지방 자치”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전하였다. (중략) 다만 도(道) 평의회, 부(府)·군(郡)·면(面) 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달리 의결권이 없었고, 대부분 도 지사와 군수가 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만 의원이 될 수 있었다. (246쪽)
	둘째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이다. 즉, 고위 관료·경찰·군인·관검사 등 일제의 권력 기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포를 괴롭히고,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수행한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광복 이후 군 장성이나 경찰 고위직, 고위관료나 정치인 등으로 활동하였다. (252쪽)
비상 교육	총독부의 주요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총독부의 직속 자문 기관인 중추원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로 구성되었다. 또한 일제는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중략) 한국인의 저항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면과 동·리를 통폐합하고, 전직 관료와 면의 유력인사 가운데 면장을 뽑아 이들을 식민 통치의 동반자로 끌어들이었다. (272쪽)
	일제는 지방 제도를 개편하여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로서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가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277쪽)
지학사	총독부를 비롯한 상급 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고,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조선 총독의 자문 기관으로서 설치한 중추원은 일제에 적극 협력해 온 친일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다. (282쪽)
천재 교육	총독부 관료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도나 군의 관리 중에서도 중요한 직책은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총독부는 자문 기관인 중추원을 두고 친일 인사들에게 참의라는 일종의 명예직을 주었다. (242쪽)
	조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중추원을 확장하고 지방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에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만들고 지방 자치제의 시행을 표방하였다. (252쪽)

8종 교과서는 일제 통치기구에 가담한 행위로 주로 중추원과 지방의회에 참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때의 왕족이나 부일협력적인 고위관리들을 우대하고, 총독통치에 조선인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었다.<sup>34)</sup> 교과서는 중추원에 대해 대부분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실질적인 기능 없이 한국인의 정치참여를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그중 금성·리베르·비상은 중추원에 이완용·송병준과 같은 부일협력자들이 중추원에 참여하였다고 구체적인 인명을 거론하였다. 다만 8종 교과서 모두 중추원에 참여한 부일협력자들이 일제의 통치 정책에 어떤 식으로 협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1920년대에 들어 일제가 광범위한 부일협력세력 육성에 힘을 기울였고 그것이 지방 협의회·평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경제적 지배층인 지방

3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III, 39쪽.

유력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도 평의회, 부·군·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sup>35)</sup> 지방의회에 대해서 두산과 지학사를 제외한 교과서에서는 모두 “지방자치제 시행 표방” 혹은 “조선인의 정치참여 선전”이라는 목적아래에 지방의회가 설치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중 금성에서는 상층 자산가들을 지배 체제에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친일과 육성”에 주력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미래엔은 “허용되지 않은 참정권, 이름뿐인 지방 자치”<sup>36)</sup>라고 소제목을 붙여 지방의회가 일제의 통치정책 선전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두산은 지방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일제가 민족 지도자와 지방 유지를 포섭하는 데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서술하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제 통치에 협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학사는 일제 통치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대하여 중추원에 대한 서술만 하였다.

중추원이나 지방의회에 참여한 것 외에 헌병이나 경찰, 법조인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었다. 금성은 “일부 조선인들은 일제의 친일과 육성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군인, 경찰, 관료, 법조인 등으로 일제의 권력 기관에 투신하여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sup>37)</sup>고 서술하여 부일협력자 육성 정책에 따라 일제의 통치 기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미래엔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를 구분하여 “고위 관료·경찰·군인·판검사 등 일제의 권력 기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포를 괴롭히고,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수행한 자들이다”<sup>38)</sup>라고 서술하여 일제 통치기구에 가담하여 적극 협력한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하였다. 일제 통치에 협력한 인물을 거론한 교과서는 미래엔·비상·천재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도 일제 악질 고문 경찰이었던 ‘노덕술’만 거론

3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의 책 Ⅲ, 45쪽.

36) 한철호 외 7인, 위의 책, 246쪽.

37) 김종수 외 7인, 위의 책, 343쪽.

38) 한철호 외 7인, 위의 책, 252쪽.

하였다. 그밖에 다른 인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 3.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은 침략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일제의 인적·물적·사상적·생활 문화적 전시총동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가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일제의 강제 인력동원에 관여한 행위,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거액의 현금이나 군수품을 헌납한 행위,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자체를 옹호·선진한 행위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문화·예술계에 치중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은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종합적인 서술은 간략하였는데, 교학사는 일제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자들이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면서 부일협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천재는 “전시 동원 체제와 사상 통제”라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중일전쟁 이후 황민화운동의 중심적 기구로서, 하부조직으로 행정단위별 지방연맹과 관공서·학교·회사·종교단체 등 각종 하부 연맹을 조직하게 하고, 그 아래 10호 단위로 ‘애국반’까지 조직하게 하여 조선인의 생활전반을 통제하였다.<sup>39)</sup>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전쟁 물자수탈을 위해 어떤 방식을 활용하였는지 언급한 것은 천재가 유일하였다.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지면을 별도로

39) 김승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7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76쪽.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황국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의 혁신, 전시경제정책에의 협력, 근로보국, 생업보국, 충후의 후원, 방공 방첩, 실천망의 조직과 지도의 철저” 등이었다. (김승태, 같은 책, 90쪽.)

구성하여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금성·두산·미래엔·비상은 “친일의 길을 걷은 변절자들”<sup>40)</sup>, “침략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sup>41)</sup>, “친일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sup>42)</sup>, “전시 동원 체제에서 일체에 협력한 사람들”<sup>43)</sup>이라는 지면을 따로 구성하여 부일협력자들, 특히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들을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8종 교과서 모두 다른 부일협력 행위보다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실명을 거론한 경우가 많았다. 실명이 거론된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교과서에 실명이 거론된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sup>44)</sup>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인물	직업	인물	직업	인물	직업	인물	직업
이광수	문인	노천명	문인	이광수	문인	이광수	문인
유치진	예술가	이광수	문인	박홍식	자본가	최남선	문인
김동환	문인	최남선	문인	문명기	자본가	박홍식	
노천명	문인	홍난파	예술가	최남선	문인		
김기창	예술가	현재명	예술가	노천명	문인		
최남선	문인	김은호	예술가	모윤숙	문인		
안석영	예술가	김기창	예술가	홍난파	예술가		
		박홍식	자본가	김기창	예술가		
				김은호	예술가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인물	직업	인물	직업	인물	직업	인물	직업
이광수	문인	최린	종교인	이광수	문인	이광수	문인
김활란	교육자	김활란	교육자	최린		최린	종교인

40) 김종수 외 7인, 위의 책, 343쪽.

41) 왕현중 외 6인, 위의 책, 250쪽.

42) 한철호 외 7인, 위의 책, 252~253쪽.

43) 도면희 외 7인, 위의 책, 282쪽.

44) 8종 교과서에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부일협력자로 구분지어 제시한 인물을 정리하였고, 해당 인물의 직업은 교과서에서 직업을 언급하거나 분류한 경우에만 기입하였음.

최린		박홍식	자본가	박홍식		김성수	언론인
노천명	문인	김기창	예술가			최남선	문인
김기창	예술가	이광수	문인				
김연수	자본가	김연수	자본가				
		최남선					
		박홍식	자본가				

8종 교과서에서는 자본가·지주·교육자·종교인·언론인·문인·예술가 등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은 문인과 예술가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인물은 이광수였다. 이광수는 자치론을 주장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며 전쟁 협력을 옹호·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한 인물로 서술되었다. 6종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은 최남선인데, 미래엔과 지학사에서 최남선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부일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5종 교과서에서 거론한 인물은 김기창, 박홍식이다. 김기창은 예술가로서 일제 침략 전쟁에 참가한 병사를 묘사한 그림을 그려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인물로 서술되었다. 박홍식은 화신 백화점 사장으로,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항공기와 기관 총 등의 전쟁 물자를 일제에 헌납한 인물로 서술되었다.

<표 7> 경제적 측면의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술내용
교학사	대표적 인물로 이광수는 국방헌금과 학도병 출병 등을 적극 권유하였다. 이어 교육자와 문학자, 예술인과 기업인, 나아가 종교인의 일부까지도 일제의 침략전쟁 협력에 동참하였다. 상공업자들 가운데는 일제의 전시 호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288쪽)
금성출판사	화신 백화점 사장 박홍식을 비롯한 친일 자본가들은 국방헌금을 내거나 비행기와 무기를 구입하여 일본군에 헌납하였다. (자료)비행기 헌납 일제가 국방 헌납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지역 유지가

	헌납한 비행기로, 기체에 ‘조선(朝鮮)’이라는 글씨를 써 놓았다. 기체에 헌납한 자의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343쪽)
두산 동아	(경제)박홍식 : 화신 백화점 사장으로 있던 박홍식은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이사 등으로 전쟁에 협력하며 각종 전시 동원 강연에서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연설을 하였다. 제지업과 수산업, 금광 경영 등으로 자본을 모은 문명기 등 기업인들은 국방헌금, 전시 공채 매입 외에도 항공기와 기관총 등 무기를 사서 일본군에 헌납하기도 하였다. (250쪽)
리베르 스쿨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본가는 비행기를 헌납하였고, 일부 지식인은 일제 침략을 찬양하고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282쪽)
미래엔	(사진자료)애국 헌납기 1444호의 모습 :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대대적인 국방헌금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일제와 협력 관계에 있던 각 지역의 유지들은 국방헌금을 내는 데 앞장섰다. 특히 전국적으로 비행기 헌납 기성회를 조직하여 8대의 군용기를 헌납하였다. (253쪽)
비상 교육	일본군에 군수 물자를 지원한 김연수와 박홍식 : 경성 방직 사장 김연수와 화신 백화점 사장 박홍식은 친일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1930년대 군수 산업에 뛰어들면서 친일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많은 국방헌금을 내거나 항공기·기관총 등 무기를 사서 일본에 헌납하였다. ‘친일 기업인들의 헌금으로 만든 비행기’ 사진 수록 (282쪽)
지학사	없음
천재 교육	없음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은 대체로 국방헌금과 군수물자 헌납에 대한 서술이었다. 교학사는 전쟁 협력의 대표 인물로 이광수를 꼽으면서 국방헌금과 학도병 출병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리베르는 본문에서 “인적·물적 수탈을 강행하다”<sup>45)</sup>라는 소주제에서 일제의 전쟁 물자 수탈을 설명하면서 일부 자본가와 지식인의 부일협력 행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금성·두산·미래엔·비상은 경제협력의 대표 인물로 화신 백화점 사장 박홍식을 언급하면서 국방헌금을 내거나 비행기나 무기를 일본군에 헌납하

45) 최준채 외 4인, 위의 책, 280~282쪽.

였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사진자료로 헌납한 비행기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그중 두산은 박홍식이 1942년에 천황을 알현하고 매일신보(1943. 12. 26)에 게재된 글을 함께 수록하여 부일협력 행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비상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본가로 박홍식과 함께 김연수를 언급하였다.

지학사와 천재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았다. 지학사는 박홍식을 부일협력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VI단원의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노력하다”<sup>46)</sup>라는 소주제에서 반민특위에 의해 기소된 인물로 언급이 되는 정도였다. 배경지식 없이 본문의 서술내용만 본다면 어떤 부일협력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천재는 다른 교과서에서 부일협력 자본가로 규정한 박홍식을 교과서에 수록하였지만 부일협력자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사진) 화신백화점 : 1929년 박홍식이 종로 2가에 세운 것으로 한국인이 주로 애용하였다. 당시 일본인은 현재 명동에 위치한 미쓰코시 백화점을 주로 애용하였다.”<sup>47)</sup>라고 서술하면서 일제강점기 일상생활의 변화 측면에서 식민지 시기의 도시 모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였다.

**<표 8> 문화·예술 측면의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술 내용
교학사	1930년대의 극예술 연구회는 민족적 비극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켰다. (중략) 1938년 일제의 탄압으로 극예술 연구회가 해체되고, 1940년 이후에는 일제가 일체의 민족주의적 예술 활동을 금지하여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연극 외에는 공연할 수 없었다. (중략) 1930년대 중반에는 발성 영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영화는 일제 침략전쟁의 선전 도구로 전락되었다. (268쪽)
	(자료) 노천명,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 (중략) 김동환, 노천명 등의 시인들은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제목의 친일 시를 매일신보에 돌아가며

46) 정재정 외 7인, 『한국사』, 지학사, 2014, 350쪽.

47) 주진오 외 8인, 위의 책, 286쪽.

	<p>발표하였다. / 김기창의 ‘총후병사’(1944) : 김기창은 총독부의 전시 미술 행정에 일조하였으며, 일제의 강제 징집을 선전하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적진 육박’, ‘총후 병사’ 등의 작품을 그려 논란이 되었다. / ‘지원병’(1941) : 안석영의 연출작으로, 엘리트였지만 가난했던 주인공이 모든 고민을 뒤로한 채 지원병에 입대한다는 내용으로, 1938년 일제가 발표한 지원병 제도를 선전한 영화이다. (286~287쪽)</p>
<p>금성 출판사</p>	<p>반면, 중·일 전쟁 이후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호응하여 친일 문학을 주장하는 문인들도 늘어났다. (중략)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과 식민 통치를 찬양하도록 강요하였고, 일부 문화·예술인은 일제의 의도에 맞추어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 성향의 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341~342쪽)</p>
	<p>이광수나 최남선과 같은 저명한 문인들은 조선 민중들에게 징병과 학도병에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자신들의 문학적 재능을 조선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데 이용하였다. 홍난파와 현제명 등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였고, 김은호와 김기창 등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그림을 그렸다. (343쪽)</p> <p>(자료) 친일 문학 : 노천명, ‘부인 근로대’ 매일신보에 기고한 최남선의 학도병 지원 권유기사(1943.11.4) 총후병사(김기창) : 김은호의 제자 김기창이 완전 군장을 한 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군인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얼굴과 주먹 쥔 손에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참가한 병사의 굳은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42~343쪽)</p>
<p>두산 동아</p>	<p>(문학)친일 문학가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일 일제가 벌이는 침략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최남선은 “제군! 대동아의 성전은 (중략) 세계 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여 (중략)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매일신보, 1943.11.20.)라며 학병을 권유하였다. 이광수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살아야 함을 부르짖고, (중략) 전쟁에 참여하기를 독려했다. 모윤숙, 노천명 등 유명했던 여류 문인들도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 (251쪽)</p>
	<p>(예술)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예술가들은 일제의 침략을 찬양하는 작품 활동을 벌였다. 김기창은 완전 군장 상태로 간이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훈련병의 옆모습을 그리고(총후병사 그림), 일제의 ‘선전(조선미술전람회; 필자)’에 추천 작가로 활동하였다. 김기창의 스승인 김은호는 금비녀를 헌납하는 그림을 그려 일제에 바치기도 하였다. /홍난파 : ‘장성의 파수(최남선 작사)’와 ‘희망의 아침(이광수 작사)’ 등 친일노래를 발표하였다. 현제명은 ‘가는 비’, ‘서울(이상 최남선 작사)’ 등을 작곡하였고, 일본 국민가의 보급과 지</p>

	도에 앞장섰다. (251쪽)
리베르 스쿨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친일 문학이 등장하였다. 최남선, 이광수 등은 일제의 강요와 회유로 전쟁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316쪽)
	1940년대 들어 연극이 황국 신민화에 이용되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일제를 찬양하는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317쪽)
미래엔	중·일 전쟁 이후부터 일제는 문학과 예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전쟁 동원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단체를 만들어 침략전쟁을 찬양하도록 강요하였다. 결국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가 친일 단체에 가입하여 친일 행위에 앞장서게 되었다. (285쪽)
	(자료)총후병사(김기창) 일제의 침략전쟁을 선전하는 그림이다. 탐구활동)저항이냐, 친일이냐? (자료2)노친명,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285쪽)
비상 교육	일제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미화한 김기창 : ‘바보산수’로 불리는 독창적 한국화를 그렸던 김기창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였던 친일 미술가였다. (자료)적진육박 : 대검을 소총에 끼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일본군을 묘사하였다. /총후병사 : 완전 군장을 갖추고 휴식을 취하는 병사를 통해 전쟁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현하였다. (282쪽)
	한편,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1930년대 후반 들어 예술에 대한 탄압도 심해지자 친일적 성향의 예술 활동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329쪽)
지학사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창작 활동이 위축되었다. 일제가 항일 의지를 담은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함에 따라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주로 창작될 수밖에 없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문인이 늘어났다. (326쪽)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연극 활동을 금지하고, 연극인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후 연극을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였으며, 연극인들을 황국신민화 정책에 동원하였다. (327쪽)
천재 교육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저항적인 문학 활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한편으로는 친일 문학 활동을 적극 조장하였다. 중·일 전쟁 이후 최남선, 이광수 등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중략)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전반적으로 문예 활동을 통제하면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친일 활동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다수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친일 행위에 앞장서거나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 (285쪽)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서는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서술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성과 두산에서만 문학·미술·음악 활동 별로 구체적인 인명을 거론하여 전쟁 협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머지 교과서는 문학이나 연극 분야만 서술하거나 문화·예술 분야로 통틀어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제시된 예시 자료를 보면, 두산은 분야별로 전쟁 협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사진 또는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금성·미래엔·비상은 문학·미술 분야에 대한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교학사는 영화 분야의 사례도 제시하였지만 자료 자체를 관련된 본문내용과 20쪽이나 떨어진 지면에서 제시하여 예시 자료로서의 효과가 떨어진다. 리베르·지학사·천재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예시 자료를 수록하지 않았다.

8종 교과서 모두 중·일 전쟁이후 문화·예술 활동이 침략전쟁에 대한 찬양 및 선전·동원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협력 활동의 자발성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교학사·리베르·미래엔·비상·지학사는 일제의 탄압과 강요로 인해 문인과 예술가들이 협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금성은 본문내용에서는 일제의 통제와 강요로 인해 부일협력적인 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친일의 길을 걸은 변절자들”이란 별도의 지면에서는 전쟁협력에 대한 예술가들의 자발성을 부각시켜 설명하였다. 천재는 문학 활동에 대해서 중일전쟁 이후 최남선·이광수 등의 문인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는 활동을 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지면에서 일제의 친일 활동 강요로 인해 대다수의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친일 행위’에 앞장서거나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서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지면상에서 협력 행위에 대한 자의성과 타의성이 함께 서술되어 의미가 서로 상충된다. 반면 두산은 “침략전쟁에 앞장선 사람들”이란 지면을 별도로 구성하여 “친일 문학가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일제가 벌이는 침략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sup>48)</sup>든

지 “앞장섰다”든지 전쟁 협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부일협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전반적으로 부일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문화·예술 측면의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 행위에 치우쳐 있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인명 또한 침략전쟁에 협력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수록된 자료들도 문화·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었다. 구한말 매국행위자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을사오적에 대한 설명 없이 을사오적이라는 용어를 기술한 경우가 있었고, 일진회의 합방 청원과 같은 부일협력적인 활동에 대한 서술이 간략한 경우도 있었다. 일제 통치 협력에 관한 서술은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었으며, 통치기구에 대해서는 8종에서 모두 일제 강점기의 중추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부일협력자들이 중추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한 교과서는 없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따르면 부일협력자 1,005명 중 정치부문은 383명(38.11%), 통치기구부문은 272명(27.06%), 경제·사회부문은 187명(18.61%), 문화부문은 82명(8.16%), 해외부문은 81명(8.06%)이었다. 부일협력자의 비율 중에서 경제·사회부문과 문화부문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정치부문과 통치기구부문보다 많이 거론되었다. 문화·예술계에만 치중된 교과서 서술은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의 부일협력활동이 문화·예술계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부일협력 문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두드러진 것이 아니다. 합방 이전부터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의 부일협력자 육성 정책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쳐 부일협력자들이 활동하였음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기와 분야를 한정시켜 설명하기보다는 1945년 해방까지 일제강점기 전

---

48) 왕현중 외 6인, 위의 책, 251쪽.

시기에 걸쳐 일본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실명 거론과 함께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IV.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서술과 문제점

### 1.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 원인

해방 후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는 미군정의 현상 유지 정책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사적 전략기지 확보를 통한 대소 방과제 구축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남한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고 정치적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대한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해방 후 조선에서 예상되는 혁명적 상황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점령 정책의 기초로 삼았다. 특히 반소반공기지 건설이라는 대한정책을 수용하는 세력을 활용하였으며, 미군정의 정책에 위배되면 어떤 세력이든 배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구의 임시정부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배제되었고, 부일협력자 세력과 그들의 비호집단으로 지목되었던 한국민주당은 미군정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들이 상당 기간 그대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식민지 경찰 등을 비롯한 일제 통치기구도 대부분 잔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제시기 조선인 관리의 재기용은 단순히 군정 관리로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기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다시 부일협력자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sup>49)</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일협력자 청산이 미뤄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49) 박찬승 편, 『한국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320~323쪽; 이강수, 위의 책, 16쪽; 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 친일과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32~35, 51~52쪽을 참조하여 정리함.

<표 9>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 원인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 술 내 용
교학사	광복 직후 조선 총독부를 대체할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 지배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307쪽)
금성출판사	신국가 건설과 함께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는 곳곳에 만연한 일제 잔재를 씻어내는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친일파 청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광복 직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친일파 청산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여기에는 미 군정청이 조선 총독부 행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제 강점기 관리들을 그대로 기용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본격적인 친일파 청산은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되었다. (372쪽)
두산동아	광복 직후에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친일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광복 후 대다수 단체와 국민들은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하였던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귀국 후 친일 세력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274쪽)
리베르스쿨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이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는 친일파 청산이었다. 광복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여파로 좌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반공 애국 투사로 변신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일제 총독부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여 친일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339쪽)
미래엔	광복 이후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비호하였다. (314쪽)
비상교육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52쪽)
지학사	없음
친재교육	없음

지학사와 천재는 본문내용에 해방 직후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와 관련된 서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반민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해방 직후 부일협력자 청산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서술한 교과서는 금성·두산·리베르·미래엔·비상으로, 각각 서술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당시에 부일협력자 처벌 및 청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교학사는 해방 직후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를 대체할 통치기구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미군정은 일제 식민 지배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sup>50)</sup>라고 서술하면서 미군정시기에 부일협력자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교학사·금성·리베르·비상은 해방 이후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 원인으로 미군정이 일제 총독부의 한국인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한 것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금성은 “광복 직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친일파 청산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sup>51)</sup>고 서술하며 당시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의 한 원인으로 기술하였다. 리베르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부일협력자들이 반공 애국 투사로 변신한 점과 미군정이 일제 총독부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여 부일협력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당시 신탁통치 찬반 논쟁이전까지 부일협력자는 매국노이자 민족반역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반탁운동을 ‘세탁’의 계기로 삼아 애국자로 둔갑하였다. 부일협력자가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익의 반탁투사들은 공산당을 부일협력자로 몰아세웠다. 반탁투쟁은 즉시 독립을 원하는 한국인에게 호소력이 컸고 수세에 몰렸던 우익을 공세로 전환시켰다.<sup>52)</sup> 이와 같이 신탁통치 찬반 논쟁을 계기로 부일협력자들

50) 권희영 외 5인, 위의 책, 307쪽.

51) 김종수 외 7인, 위의 책, 372쪽.

52)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44쪽.

이 애국자로 둔갑하게 되면서 부일협력자 청산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리베르의 이와 같은 서술은 8종 교과서 중 해방 직후 부일협력자 청산의 지연 원인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었다.

미래엔은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비호하였다”<sup>53)</sup>라고 서술하며 청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당시 미군정이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에 대해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두산은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부일협력자 청산이 미뤄진 이유에 대하여 당시 이승만이 청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광복 직후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친일파 문제 처리”임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부일협력자의 처단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이승만이 부일협력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일협력자 청산에 소극적이었다고 서술하였다.

## 2.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및 반민특위의 활동

5·10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부일협력자 숙청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 소장과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독립운동을 살상·박해한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법원과 검찰에는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반민족행위 특별검찰부 등이 조직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신문·출판물·구전 증언·일제시기 관보·직원록·총력연맹기관지·『친일파군상』 등의 자료를 통해 반민족자 일람표를 작성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조사와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 서울과 각 도의 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투서나

53) 한철호 외 7인, 위의 책, 314쪽.

제보를 받았으며, 반민족자의 자수 등을 통해서 조사와 체포가 이루어졌다.<sup>54)</sup>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의 반민족 행위를 한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종형·최린·노덕술·박중양·김연수·최남선·이광수 등이 체포되면서 반민특위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sup>55)</sup>

<표 10>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술 내용
교학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 경찰을 조직하였다. (307쪽)
금성출판사	제헌 국회는 정부 수립 직후 국민적 열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특별 재판부 등의 기구들이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데 그쳤으며, 기소된 자 가운데 특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12명에 불과하였다. 실제 사형 집행은 한 명도 없었으며, 그나마 대부분은 감형되거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사진자료) 반민특위 투서함 (372쪽)
두산동아	친일 경력자들은 청산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헌 국회는 친일파 처벌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 특위는 1949년 1월부터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중략) 반민특위는 700여 건의 친일파 문제를 취급하였으나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산 것은 10여 건에 불과하였다. 반민 특위가 와해되자 조사를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풀려났다. 특별 재판에 회부되었던 사람들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 실제로 처벌을 받은 친일파는 거의 없었다. (자료)반민 특위의 실적 /반민족 행위자 투서함 사진 수록 (274쪽)

54) 박찬승 편, 위의 책, 367쪽; 이강수, 위의 책, 121쪽을 참조하여 정리함.

55) 박찬승 편, 위의 책, 367~368쪽 참조.

리베르 스쿨	<p>1948년 9월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소급법으로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 제정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친일 행위를 했던 관료와 경제·문화·종교계 인물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박홍식,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이 체포되었다.</p> <p>(자료읽기)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특위로 압송되어가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들, 반민특위 공판 모습 사진 수록 (339~340쪽)</p>
미래엔	<p>정부 수립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1948. 9.),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구성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다. (사진자료)구속되는 반민족 행위자 : 왼쪽부터 노덕술, 김연수 최린이다.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사장인 김연수는 일제에 거액의 현금을 냈다. (314쪽)</p>
비상 교육	<p>제헌 국회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 특위는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체포하였다. (352쪽)</p> <p>(자료)반민 특위의 활동 : 반민특위는 국민의 성원 속에 활동을 시작하여, 화신 재벌의 총수로 일제에 비행기까지 헌납하였던 박홍식, 독립운동을 흑독하게 고문하였던 고등계 형사 노덕술, 민족지도자였으나 이후 변절하였던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을 체포하였다.</p> <p>(자료)반민 특위의 실적 /반민 특위에 체포된 반민족 행위자들 사진 수록 (352쪽)</p>
지학사	<p>제헌 국회는 일제에 협력하여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처벌하고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1948. 9.). 이 법에 의거하여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 특위는 박홍식, 최린, 이광수 등 친일 경력자들을 기소하였다.</p> <p>(사진자료)친일 행위자의 행적을 고발하기 위한 투서 (350쪽)</p>
천재 교육	<p>한편 국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1948. 9.). 반민 특위는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고 주요 인물 검거에 나섰다.</p> <p>(사진자료)반민 특위에 체포된 친일파들 (310쪽)</p>

8종 교과서 모두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술내용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교학사·미래엔·지학사·천재는 간략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미래엔은 함께 제시한 “구속되는 반민족행위자”라는 사진자료에서 노덕술·김연수·최린에 대해 언급하며, 김연수가 왜 구속되었는지 설명하였다. 지학사와 천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천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고 잘못 표기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 두산과 리베르는 처벌법 제정의 근거가 헌법에 명시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두산은 “친일 경력자들은 청산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다”<sup>56)</sup>는 서술을 통해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가 이념 논리와 결부되어 헌법의 이 조항을 만드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리베르는 근거가 된 제헌 헌법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금성과 비상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88명의 반민 피의자를 다루었다. 이 중 675명의 반민 피의자 또는 조사자가 확인되었으며, 675명 중 일제시기 경력이 확인된 피의자는 547명이었다. 그러나 1949년 3월 28일 첫 공판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8월 31일까지, 특별재판부는 사형 1, 무기, 1, 체형 13, 공민권 정지 18, 형 면제 2, 무죄 6 등 총 41건을 취급하였다. 전체 688명의 피의자 중 단 0.6%만이 법정애 섰다. 그것도 공민권 정지 외 실형은 15건이고, 그나마 사형과 무기는 2건뿐이었다.<sup>57)</sup> 반민특위의 활동은 금성·두산·리베르·비상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금성과 두산은 반민특위가 약 700여건의 부일협력 문제를 조사했으나 그중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여 건에 불과했다고 서술하며 당

56) 왕현중 외 6인, 위의 책, 274쪽.

57) 이강수, 위의 책, 228, 299~300쪽.

시 반민특위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비상은 “생각을 키우는 자료-반민 특위의 활동”<sup>58)</sup>에서 박홍식·김연수·노덕술·이광수·최남선·최린의 실명을 언급하며 어떤 부일협력행위로 인해 기소되었는지 부가설명을 하였다. 리베르와 비상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서술하였다. 그중 리베르는 “반민족 행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친일 행위를 하였던 관료와 경제·문화·종교계 인물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sup>59)</sup>라고 하며 조사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천재는 8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반민특위가 선정한 반민족 행위자의 수가 7,000여 명이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미래엔과 지학사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약 1줄 정도로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교학사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한 서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는 “반민족 행위자 투서함” 또는 “구속되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사진자료를 수록하였다. 그중 미래엔과 비상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의 사진자료는 수록된 자료에 대한 부가설명이 없었다. 또한 두산과 비상은 사진자료와 함께 “반민 특위의 실적” 표를 함께 제시하여 반민특위가 활동을 통해 취급한 건수에 비해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학생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교학사는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3. 반민특위의 해체 과정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화신재벌 총수 박홍식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반민특위는 조직과 동시에 부일협력자와 이승만 정부의 방해공작에 직면하였고, ‘반민족행위’ 조사활동을 시작한

58) 도면회 외 7인, 위의 책, 352쪽.

59) 최준채 외 4인, 위의 책, 340쪽.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프락치사건으로 반민특위 의원들이 탄압받았다. 반민특위가 서울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를 체포하자 경찰은 내무부 차관 장경근과 김태선 시경국장의 지시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이른바 ‘6·6 반민특위습격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결국에는 부일협력자에 대한 청산이 무산되었다. 게다가 원래 1950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던 반민법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앞당긴 한민당의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특위 활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이후 부일협력자 청산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sup>60)</sup>

<표 11> 반민특위의 해체 과정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

출판사	서술내용
교학사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307쪽)
금성출판사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민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또한, 반민 특위 활동을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였다. 일부 경찰들은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반민법의 시효를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반민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되고 말았다. (341쪽)
두산동아	반민 특위가 본격적으로 친일 청산에 나서자 친일 경력이 있던 일부 경찰과 친일파들은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간 반민 특위 위원은 공산당’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반민 특위가 친일 경찰 출신으로 현직 경찰 간부이던 노덕술을 체포하자 경찰은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반공을 우선시하던 이승만이 공공연히 경찰을 지지하면서 반민 특위 활동은 무력화되고, 결국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274쪽)

60) 박찬승 편, 위의 책, 368쪽; 이강수, 위의 책, 17쪽; 허종, 위의 책, 375쪽을 참조하여 정리함.

리베르 스쿨	<p>반민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방해 공작이 잇따랐다. 1949년 6월 경찰 간부 체포에 불만을 품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위위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였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남로당의 조종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회 의원 10여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국회 프락치 사건; 필자). 이 때문에 반민 특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민 특위의 업무는 대법관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 특위는 해체되었다. 이 때문에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340쪽)</p>
미래엔	<p>그러나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하였다.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314쪽)</p>
비상 교육	<p>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들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결국 반민 특위에서 조사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려났고, 반민 특위의 활동 기간마저 축소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52쪽)</p>
지학사	<p>반민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자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의 체포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반민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친일파 체포 활동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반민 특위의 활동 기한이 단축되었는데, 이에 반발하여 반민 특위 위원장 등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후 반민 특위 활동은 침체에 빠졌고 1949년 10월에 결국 해체되었다. (350쪽)</p>
친재 교육	<p>그러나 반공 우선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친일 경찰 출신의 현직 경찰 간부였던 노덕술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의 기한이</p>

	줄어들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크게 축소되어 반민 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광복 이후 친일 잔재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310쪽)
--	---

8종 교과서는 반민특위 해체 과정을 대체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 “「반민족행위처벌법」개정을 통한 활동기간 단축”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내용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한 교과서는 금성과 비상뿐이었다. 나머지 교과서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해체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학사는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만을 언급하며 반민특위 해체 과정에 대해 가장 짧게 서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교학사, 리베르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에서 서술하였다. 그중 금성·두산·비상·천재는 부일협력자의 청산보다 반공을 우선시 한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한국민주당의 주요 인물은 부일협력자 청산의 대상이었다. 그에 따라 한국민주당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과 독립운동단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며 활로를 마련해갔다. 이승만은 일제시기에 해외에서 활동한 관계로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조직적 기반이 취약했고 좌익세력을 배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부일협력자들을 자신의 주요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일협력자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sup>61)</sup>

금성·리베르·미래엔·비상은 “국회 프락치 사건”을 설명하였다. 지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는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을 반민특위 해체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지학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 경력

61) 허중, 위의 책, 58~60쪽.

이 있는 사람들이 반민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였다.”<sup>62)</sup>고 서술하여 방해활동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금성·리베르·비상·지학사·천재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효가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되어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리베르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8종 교과서 중에 가장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민 특위의 업무는 대법관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 특위는 해체되었다”<sup>63)</sup>라고 서술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교과서 서술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과서 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한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서술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활동 및 해체에 대해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술내용과 분량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해방 직후 부일협력자 청산이 지연된 배경과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반민특위의 활동 및 와해 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리베르뿐이었다. 그러나 리베르도 반민특위 해체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의 서술 분량이 가장 적었다. 금성·두산·비상만 5줄 이상의 서술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종은 1~3줄의 서술뿐이었다. 심지어 교학사는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었다. 반민특

62) 정재정 외 7인, 위의 책, 350쪽.

63) 최준채 외 4인, 위의 책, 340쪽.

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부일협력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를 위해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이후 방해공작이 있었다는 것이 유기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였고, 해체 과정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반민특위 활동의 의의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부일협력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어떤 분야의 부일협력자들이 기소·체포되었는지, 반민특위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서술을 보강해야만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의 의의가 부각될 수 있다.

8종 교과서는 반민특위의 해체 배경을 대체로 이승만 정부의 반공 우선주의 정책, 국회 프락치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활동기한 단축을 꼽았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요소가 연계되어 서술된 교과서는 2종에 불과하였다. 반민특위의 해체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갑자기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승만 정부의 반공 우선주의 정책으로 반민특위 활동에 제약이 컸으며,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을 계기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의 여러 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가 위축된 상황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 단축으로 활동 기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해체되었음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해야 한다.

## V. 맺음말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부일협력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청산 작업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용례를 통해 부일협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부일협력의 의미로 ‘반민족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주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만을 강조한 것이었다. 부일협력 문제는 민족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협력을 통해 평화를 파괴하고 혹은 군국주의적인 억압 통치에 협력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반민족행위’로만 개념을 규정하면 부일협력의 문제점이 제한적으로 제기 되는 한계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친일’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갑오·을미개혁을 추진한 개화파 인사나 내각의 정치적인 성격을 기술할 때 ‘친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부일협력의 의미로 ‘친일’이라는 용어를 통용해오면서 정치적 성향보다 부일협력의 의미가 부각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민족행위’라는 용어가 가지는 민족주의만을 강조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친일’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의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통용될 수 있는 ‘부일협력’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구한말 매국행위,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의 측면에서 진행하였다. 구한말 매국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매국행위의 개념에 있어서는 일치하였다. 매국행위자의 대표인물로 이완용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합방 청원 운동의 주체가 일진회인 것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가 있었다. 일제 통치에 대한 협력에서 항일 독립운동 탄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전혀 없었다. 금성과 미래엔에서만 일제 통치기구에 가담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고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통치기구에 종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중추원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추원에서 부일협력자들의 역할에 대한 서술은 소략적이거나 아예 없었다. 그리고 중추원 외에 통치기구에 협력한 관료, 법조인, 경찰 등의 부일협력자에 대한 서술도 거의 없었다.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에서는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명이 거론된 인물은 문인과 예술가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자료들도 문인의 선전 글이나 예술가의 그림뿐이었다. 결국 침략전쟁 협력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었으며, 경제 분야는 간략히 언급된 편이었다.

부일협력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문화·예술계에만 치우쳐 있고, 다른 부일협력 행위에 대한 서술은 간략하거나 아예 없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이 일제강점기의 부일협력이 문화·예술계의 침략전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부일협력 문제는 합방이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일본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자들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실명 거론과 함께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별로 서술 분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해방 직후 부일협력자 처벌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 교과서가 있었던 반면 아예 관련 서술을 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설치 및 활동에 대해 모든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술내용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그중요성의 비해 서술 분량 자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한 부일협력자 청산 시도의 의의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과 자료가 보강되어야 한다.

반민특위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 8종 교과서는 대체로 이승만 정부의 반공 우선주의 정책, 국회 프락치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활동기간의 단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요소가 연계되어 들어가 있는 교과서는 2종에 불과하였다. 반민특위의 해체는 어떤 한 사건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원인에 대한 짜임새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부일협력 행위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기술된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의미가 혼동되거나 교과서별로 필자의 관점에 따라 기술된 용어도 달랐다. 서술내용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교과서별 서술의 분량과 수록된 자료의 양의 편차가 심하였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부일협력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서술을 하지 않고 간략하고 모호한 서술을 하고 있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 또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이 부족하였다.

교과서별로 서술내용과 자료의 편차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최소한 ‘친일’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규정과 함께 부일협력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매국노’, ‘하수인’, ‘앞잡이’ 등 어떤 행동을 특정하거나 집필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반영된 단어가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교과서

- 권희영 외 5인, 『한국사』, 교학사, 2014.  
김종수 외 7인,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도면희 외 7인, 『한국사』, 지학사, 2014.  
왕현중 외 6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주진오 외 8인, 『한국사』, 천재교육, 2014.  
최준채 외 4인,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한철호 외 7인, 『한국사』, 비상교육, 2014.

### 2. 저서

- 김삼웅·이현중·정운현, 『친일파 : 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1990.  
김승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7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화 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박수현·이용창·허중,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8 일제의 친일파 육성파 반민족 세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찬승 편, 『한국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99인』 1~3, 돌베개, 1993.  
\_\_\_\_\_, 『청산하지 못한 역사』 1~3, 청년사, 1994.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_\_\_\_\_,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I,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_\_\_\_\_,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II,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 3. 연구

-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 27, 1993.
- 김동명, 「한국 병합과 식민지 지배」, 『일본역사연구』 18, 2003.
- 김동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친일파 문제에 대한 서술-6중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민철·조세열, 「쟁점과 동향 : ‘친일’ 문제의 연구경향과 과제」, 『사총』 63, 역사학연구회, 2006.
- 김보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한·일 역사적 쟁점에 관한 근·현대사 서술의 변천」, 『일본문화연구』 39, 2011.
- 박태균, 「8·15 직후 미군정의 관리충원과 친일파」, 『역사와현실』 10, 1993.
- \_\_\_\_\_, 「해방후 친일파의 단정·반공운동의 전개」, 『역사비평』 23, 역사문제연구소, 1993.
- 이기훈, 「친일파 협력」, 『역사비평』, 2005.
- 이용창,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문제」, 『국학연구』 7, 2005.
- 이태훈, 「일진회의 ‘보호통치’인식과 ‘합방’의 논리」, 『역사와현실』 78, 2010.
- 이해영, 「친일지식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역사인식」, 『역사교육연구』 11, 2010.
- 장세윤, 「일제하 고문시험 출신자와 해방후 권력엘리트」, 『역사비평』, 1993.
- 장하진, 「여류명사들의 친일행적-김활란·모운숙·배상명·이숙중·송금선」, 『역사비평』, 1990.
-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 한성수,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반민특위 서술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황묘희, 「침략전쟁기 상해의 친일조선인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 \_\_\_\_\_, 「침략전쟁시기 천진의 친일한인조직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2007.

### 4. 기타

- 「청소년 ‘빈약한 역사 인식’ 심각」, 『KBS』 2013년 6월 21일.
- 「“육일승천기 예뻐요” 청소년 역사교육 현실」, 『SBS』 2013년 4월 8일.
- 김영진 편, 「반민족행위처벌법 전문」 『반민자 대공판기』, 한풍출판사, 194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pj\\_002\\_0010\\_0010](http://db.history.go.kr/id/pj_002_0010_0010), 2016년 10월 24일 검색.)

# ABSTRACT

## **The Analysis o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Regarding Japanese Collaboration Issues**

**Jung So Young**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With the recent controversy over adolescents' absence of historical consciousness, many people say that the reality of history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The history education at school site is absolutely important to learn accurate historical knowledge and to cultivate correct historical consciousness. As Japanese collaboration has been a issue for a long time, it would be necessary to view the contents of description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However, in the history education academia,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on the Japanese collaboration issue through the analysis of textbooks.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were limited to textbooks of the 6th & 7th curriculum, and they were not the comprehensive researches on the Japanese collaboration issue.

Complementing the insufficient existing researches on the Japanese collaboration issue, this paper analyzed eight type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high school in 2009 revised curriculum. First, due to the ambiguity of the term 'pro-Japanese', this paper used the term 'Japanese collaboration' meaning the collaboration with Japanese colonial rule. Summarizing the concept and type of the term, 'Japanese collaboration' defined by the national-level clean-up work, the examples for 'pro-Japanese in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high school were examined. The analysis on the description in textbooks was divided into the Japanese collaboration issue and attempts to clean up Japanese collaborators, and the descrip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high school showed problems like below.

First, the concept of the term 'pro-Japanese' described in textbooks is ambiguous. Describing the term 'pro-Japanese' in textbooks, there was a chance to misunderstand civilizational party people during the Gabo/Eulmi Reform as people who collaborated with Japanese colonial rul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concept should be additionally done to clearly distinguish the meaning of terms. Second, textbooks are lacking in detailed explanation of Japanese collaboration. Overall, the textbook description of Japanese collaboration spent the most amount on the collaboration with the war of aggression in the aspect of culture/art. Therefore, the description of Japanese collaboration should be reinforced in many aspects while also paying attention to provide relevant cases and materials in diverse areas. Third, the description itself related to attempts to clean up Japanese collaborators is insufficient. Thus, the description of attempts to clean up Japanese collaborators should be reinforced in many aspects. It would be necessary to organically explain

the background of attempts to clean up and the process of activities and breakup of Special Committee, and also to present relevant materials with additional explanations.